㈜즐거운세상 인터불고 호텔

우) 42046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TEL (053)602-7113 / FAX (053)957-3506
담당자 경영지원팀 사 원 강 소 라

문서 번호 : 제 2017 - 12 호
시행 일자 : 2017. 05. 23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관광 · 조리계열 학과장님
제 목 : 2017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1. 귀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당 호텔은 대구 최초 특 1급 호텔로서 지역 호텔문화를 선도하며, 대구 · 경북지역 대학(교)과의 산학교류로 산 · 학간 정보교환, 현장체험 제공 및 학생들에게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동안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무 지식을 축적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미래에 유능한 관광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귀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하계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학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실습기간
- 1차 : 2017. 07. 03(월) ~ 07. 28(금)
- 2차 : 2017. 07. 31(월) ~ 08. 25(금)

나. 실습대상 : 해당학과 남 · 여학생 대상

다. 신청방법 : 첨부된 현장실습 신청서 및 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하여 호텔 경영지원팀(총무) 팩스 및 이메일로 송부

라. 신청기한 및 실습생 선발 절차
1) 신청서 제출 기한 : 2017. 06. 16(금)까지
2) 호텔 방문(면담) 일자 : 2017. 06. 26(월) ~ 06. 30(금) (5일간)
17:00시 전까지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위 방문 기간 중 호텔 경영지원팀(총우)에 신청서 1부(자사 양식사용 / 사진포함)을 지참하여 방문

※ 당사 홈페이지 참조(하단 채용공고 → 현장실습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3) 추후 신청서 제출 학생에 대하여 실습 가능여부 개별 통보

마. 근무시간 및 수료시 지급사항

- 주 5일제 /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수료시 수료증 및 실습비(최저임금기준) 지급

바. 문의사항 연락처

- 연락처 : 053-602-7113 (담당자 강소라 사원)
- F A X : 053-957-3506
- e-mail : srkang03@inter-burgo.co.kr

첨 부 : 1. 2017년도 하계현장실습 신청서 1부
2. 현장실습 협약서 1부. 끝.

< 수 신 처 >

가야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공주대학교	구미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문경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위덕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포항대학교	호산대학교

㈜즐거운세상 인터불고호텔

대 표 이 사 서 [illegible]

< 2017년도 하계현장실습 신청서 >

▣ 학 교 명 :

▣ 담당자 연락처 : / F A X :

▣ 신청자 명단

순번	학과(전공)	성명	성별	희망실습기간 (1차 / 2차)	연락처	비고

현장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즐거운세상 인터불고호텔(이하 '갑' 이라 한다)과 실습생(이하 '을'이라 한다)과 _____ 대학(교) 총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아래 두 기간 중 '을'이 선택한다.

[1차] 2017. 07. 03 ~ 07. 28 [2차] 2017. 07. 31 ~ 08. 25

② 현장실습 장소는 '갑'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3조(갑의 의무)

① '갑'은 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직무를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계획을 수립,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습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② 현장실습 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③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④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⑤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본인 소속 대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 시간)

① 현장실습 시간은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1주간에 40시간(주 5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 지원비)

① 현장실습 지원비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2017년 최저임금액(시급 6,470원)으로 하고 실습종료 후 최종 지급한다.

② '을'이 실습기간 중 중도하차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한다.

제7조(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수업 및 출근상황에 대한 평가서 등을 현장실습수업 종료 후 '병'에게 제출한다.

제8조(보험가입)

'병'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갑'은 '갑'의 필요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해지일 7일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② 협약 해지의 고시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증명서)

'갑'은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1조(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 한 후 '갑', '을',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갑(기업·기관)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회 사 명 : ㈜즐거운세상 인터불고호텔
대 표 이 사 : 서 기 수

을(실습생)

학과(전공)	주 소	성명 및 날인(서명)
		㊞
		㊞
		㊞
		㊞
		㊞
		㊞
		㊞
		㊞
		㊞

병(대학교) 주 소 :
학 교 명 :
총 장 : (직인)

※ '갑' 과 '병'의 직인란에는 반드시 직인 또는 법인도장을 사용하여야 함
※ '을'(실습생)란이 부족하면 추가해서 사용